

「2025년 중앙 및 지역 R&D 과제 기획·유치 지원사업」 신규과제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「2025년 중앙 및 지역 R&D 과제 기획·유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신규 중·대형 R&D(연구개발)사업 기획을 희망하는 대구지역 기업 및 대학,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9일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지원개요

□ 지원목적

- R&D 기획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과 공동과제기획을 통해 지역수요 기반의 정부 핵심정책·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과제 발굴·기획
-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과학기술 산·학 연계 네트워킹 운영 및 R&D 기획지원으로 중앙정부 중대형 R&D 지역 유치 성과 제고
-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자발적인 R&D기획을 촉진하고, 중앙정부 R&D 과제수주를 통해 연구비 확보 및 대학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

□ 지원대상 :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·중견 기업 및 대학 컨소시엄

* 주관기업(기관)은 대구광역시 내 주소지가 확인되어야하며, 이전 예정인 기업도 가능

** 기업-대학 컨소시엄 필수, 연구(지원)기관은 필요시 컨소시엄 가능

□ 지원분야 : 5대 미래산업(UAM, ABB(AI·Block-chain·Big-Data)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)

□ 지원규모 : 6개 내외 과제(2개 분야, 각 3개 과제), 총 90,000천원 이내

□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5. 10. 31(금)까지

□ 지원내용

- 기업-대학 컨소시엄 중심 우수 과제 발굴·기획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주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지원
- (과제기획) 중앙 및 지역 R&D과제발굴·기획에 필요한 기획연구회 운영 및 전문가 매칭에 필요한 예산 지원
- * 인쇄 및 도서구입비, 세미나개최비, 선행기술조사비, 회의수당, 전문가활용비, 원고 및 번역비, 회의비, 사무용품비 등(기업부담금 없이 지원금 선지급, 부가세는 사후환급 세금이므로 기업에서 부담)
- (사전컨설팅·워킹그룹운영) 중앙전문가 정책·동향 분석, 서면 컨설팅으로 기획과제 완성도 제고, 워킹그룹-대구TP 1:1 전담PM 매칭 등
- (후속 유치지원) 지원종료 후 중앙부처 및 기타 지자체 R&D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사후 전문가 검토 등 지역유치 후속지원

2 상세 지원내용

□ 과제유형 : ① (중대형)확산과제 ② (대형)전략과제로 총 6개 내외 과제 지원

구 분	① 확산과제(중대형)	② 전략과제(대형)
지원분야	○ 대구 5대 미래산업 중심 (ABB, 헬스케어, 로봇, 반도체, UAM)	
지원대상	○ 대구소재 중소·중견기업-대학 컨소시엄 필수 - (선택) 연구(지원)기관 가능 ※ 참여기관의 경우, 지역 내외 무관	
대상사업	○ 중대형 R&D 사업 기획 (중앙부처 R&D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) ※ 대상사업은 2개 이상 제시 필요	○ 대형 R&D 사업 기획 (중앙부처 R&D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)
지원규모	○ 기획연구회 운영예산 지원 : 3개 내외 (과제당 최대 10,000천원) ○ 대구TP-워킹그룹 1:1 PM 매칭	○ 기획연구회 운영예산 지원 : 3개 내외 (과제당 최대 20,000천원) ○ 대구TP-워킹그룹 1:1 PM 매칭

※ 과제별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 가능

※ 서면검토 및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과제유형이 변경될 수도 있음

※ (우대사항)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, 벤처기업/이노비즈 인증기업인 경우

□ 사전컨설팅 및 워킹그룹 운영

○(사전컨설팅) 관련분야 정책·산업 동향 세미나 및 기술분야 컨설팅

* 과제별 기술전문가 의견에 따라 과제기획개요서 수정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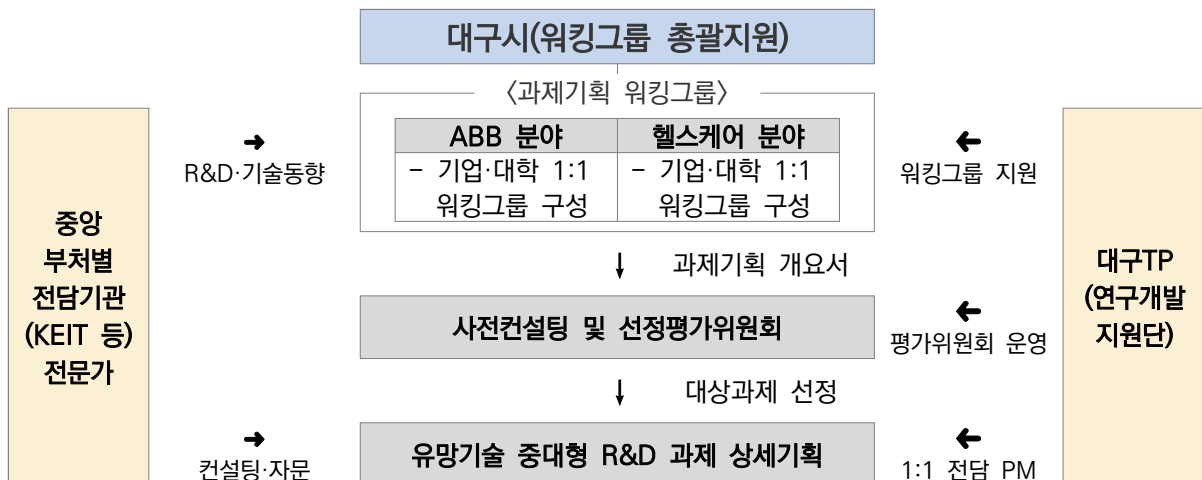
○(워킹그룹 운영) 기획보고서 작성 및 국비 수주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

- 워킹그룹-대구TP 1:1 PM 배정을 통한 전문가 Pool 및 수주활동 지원
- 과제 기획을 위한 전문가 회의, 부처(전담기관) 방문 등 활동 지원
- 기획 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중앙 전담기관 전문가 등 추가 컨설팅

□ 지역유치 지원 : 과기부 지역 과학기술 혁신허브,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예산연계 사업 및 기타 정부 지원 R&D 사업 공모 대응 및 수주 지원

구분		과제 수주 및 국비 유치 지원
포럼 · 세미나 · 교육	형 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네트워킹) 국가 R&D 관련 전문가 초청의 교류 중심 • (정책·기술동향 파악) 중앙의 R&D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
	전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위원*, 중앙부처별 전담기관 PD, 사업총괄 등 * 산하위원회(특별위원회, 협의회, 전문위원회 등)의 민간위원
사후 컨설팅	형 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전문가 검토) 중앙부처별 타겟사업의 전담기관 관계자, 기술분야 전문가를 통한 기획과제 완성도 제고 및 전략적 공모 방향설정 등
	전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부처별 전담기관* 및 대학·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단 * (과기부) 정보통신기획평가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연구재단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(산업부)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(기 타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등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구분	지원 절차	주요 내용	비고
Step1 기획 지원	모집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 대상 과제기획지원 공고 -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gtp.or.kr) 공고 	4/29(화) ~ 5/21(수)
	1차 선정평가 (서면검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면검토를 통한 지원분야별 과제 선정(2~3배수) - 연구과제 기술성/적정성/지역 전략산업 연계성 등 검토 	5월 말
	사전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분야 정책·산업 동향 세미나 및 기술분야 컨설팅 - 중앙부처 주요 정책 및 정부 R&D 동향 등 전문가 세미나 - 과제별 기술성 향상을 위한 기술분야 전문가 서면 컨설팅 * 과제별 기술전문가 의견에 따라 과제기획개요서 수정·보완 	6월 중
	최종 선정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가 컨설팅 의견에 따라 수정·보완된 과제기획 개요서 기반 선정평가를 통해 기획지원 대상과제 최종 선정(대면 발표평가) * (탈락과제 RFP 도출지원) 탈락과제 중 RFP 도출을 통해 차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별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RFP 도출을 지원하고 국비유치 등 후속지원 	6월 말
	사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구TP-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및 제안사업별 R&D사업 기획 운영 및 기획보고서 작성 등 사업수행 	6월 ~ 10월 (5개월)
	(워킹그룹 운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획보고서 작성 및 국비 수주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- 대구TP 전담 PM 배정 및 과제 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한 중앙 전담기관 전문가 추가 컨설팅 등 	6월 ~10월 중 상시
	Step2 유치 지원	기획보고서 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기획보고서(R&D 과제 공모용) 도출
과제 종료 및 과제 수주 활동 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 및 지자체 지원 R&D 사업 공모 대응 및 수주를 위한 후속 활동 지원 - 중앙부처별 전담기관 소속 전문가(PD, 단장 등) 개별 검토 등 	10월 말 ~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3 신청 및 제출방법

□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04. 29.(화) ~ 05. 21(수) 17:00까지
- 공고방법 :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gtp.or.kr) 공고
- 접수방법 : 신청서 및 과제기획 개요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
 - *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 - ** 이메일 제목 : 2025 R&D 기획지원사업 신청_기업명 작성하여 송부

□ 제출서류

구분	서류명	비고
공동 제출서류	• 신청서(과제기획 개요서)	• 붙임 1. 양식참조 • 한글(hwp, hwp) 및 PDF 파일 모두 제출
	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• 붙임 2. 양식참조 • 주관기관만 해당
	•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	• 붙임 3. 양식참조 • 서명 및 직인날인 후 스캔본(PDF) 파일
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• 주관기관이 기업이 경우
	• 2024년 표준재무제표 사본	
	•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	
• 타겟사업 모집공고문	• 신청자격 확인용(화면 캡처 혹은 파일)	
가점사항	• 가점사항 증빙자료 - 기업부설연구소, 벤처기업, 이노비즈 인증서	• 해당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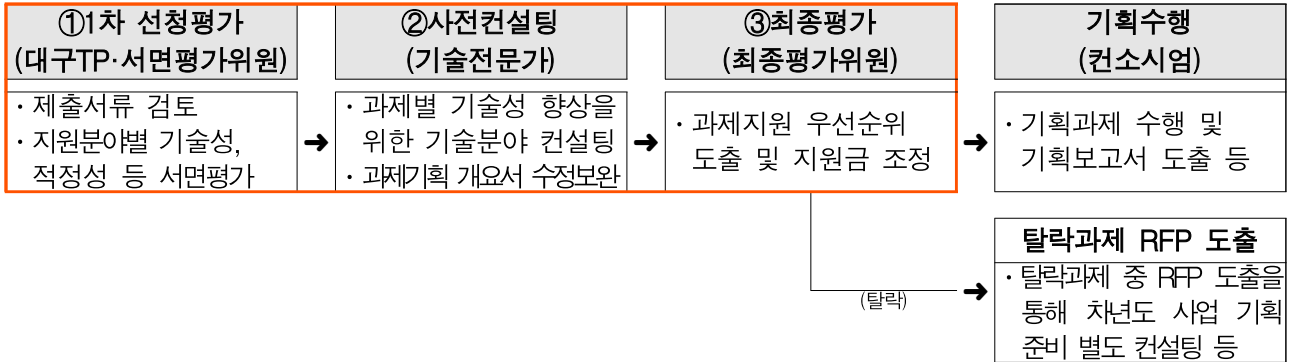
※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
□ 접수 및 문의처

-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
- ☎ 053-757-4186, E-mail) yuju@dgtp.or.kr

4 평가절차

□ 평가는 3단계(① 서면평가 → ② 사전컨설팅 → ③ 최종선정평가) 걸쳐 시행



- (1차 선정평가) 제출서류 형식요건 검토, 신청서·계획서 서면평가(2~3배수)
 - ※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일부 미비서류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추가요청할 수 있음
 - (사전컨설팅) 과제별 기술성 향상을 위한 기술분야 컨설팅
 - ※ 과제별 기술전문가 의견에 따라 과제기획개요서 수정·보완 요청
 - (최종평가) 컨설팅 의견 반영한 과제기획개요서 기반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 발표평가(1배수)
 - ※ 탈락과제의 경우, 기업수요에 따라 차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획과제에 한해 별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RFP 도출을 지원할 예정
- (평가항목)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, 사업계획의 구체성/우수성, 추진전략의 적정성/타당성, 사업화가능성, 파급효과, 연구회 구성/운영
- (지원방법) 사업비는 협약 후 대구TP에서 선지급하고 사업수행 후 보고서 검토 및 회계법인을 통해 후정산

5 대상과제 선택방법

- ※ 대상사업이란, 내년 주관기업(기관)이 신청할 R&D사업을 뜻함
 - ※ 주관기업(기관)이 대상사업의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, 선정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음
- 별첨. 2025 정부연구개발사업 캘린더 혹은 사업주관 부처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검색 → 사업별 신청자격 확인 후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금 검색
- 국비지원금 5억원 이상 → (중대형) 확산과제
 - 국비지원금 20억원 이상 → (대형) 전략과제

6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사업화지원(시제품제작, 마케팅지원 등)이 아닌, R&D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지원 사업임
-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,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- 신청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고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서면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, 평가 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
-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미집행 및 부정집행의 경우 반납
- 사업 종료 후 3개년 동안 추가적인 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유치성과를 조사하며,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

7 지원(신청) 제외대상

※ 제외대상 안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(기관)에게 있음

-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신청기업(기관) 중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-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,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절” 인 경우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※ 자본전액잠식이란, 결산재무제표에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(단,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예외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 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 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,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 - 그 외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협약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됨을 발견 즉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
 - 지원대상 제외에 신청기관, 신청기관장,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되며, 주관이 아닌 기관 또는 책임자가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가능
 - 과제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